

2026. 7.

태국 태국,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

건국대학교 KU글로벌혁신대학/부교수
권용수

1. 개요

태국에서는 창작 활동과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라이선스와 로열티 징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① 이용자가 누구에게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② 분산된 허락 구조로 인해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③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로열티를 징수하는 예도 있다는 것, ④ 특정 개인이 권리자를 대표한다고 속이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이루어진다는 것, ⑤ 집중관리단체(CMO)가 요율을 설정하고 로열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태국 상무부(MOC)가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요율 및 비용 공개 의무화, 징수 단체에 대한 자율적 행동 강령 마련, 저작권 소송대리인 등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해 왔지만,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다. 이에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저작권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징수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¹⁾.

2. 주요내용

1) 적용 범위 및 이용 유형

법률안은 태국 상무부가 부령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의 구체적 유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단, 지정 대상은 다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이용자 수가 많아 개별적 이용 허락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이용 유형에 한정된다.

2) 저작권사업자 및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이용 유형이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작권사업자나 집중관리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집중관리단체는 ① 로열티 징수 및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②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 ③ 표준 라이선스 계약 및 회원계약을 갖출 것, ④ 법률안에 따른 징수 체계 및 로열티징수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²⁾가 정하는 징수 및 분배 기준에 부합하는 정관을 갖출 것

1) <https://chandler.morihamada.com/en/insights/newsletters/7151>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사업자와 집중관리단체는 모두 부령에 따라 저작물 목록을 작성·유지해야 한다.

3) 허가받은 자의 의무

허가받은 저작권사업자나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가운데,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비차별적 방식으로 요율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로열티 징수, 징수 내역 보고, 정보 공시 및 요율 공개 등에 관한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회원 간 분배, 분배 내역 보고, 회원 규정 및 총회 승인 사항 등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용 허락 계약 기간 중에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권리에 관계된 분쟁이 발생하면, 허가받은 저작권사업자나 집중관리단체가 그 분쟁 해결 책임을 부담하며, 이용자가 입은 손해 및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4)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위원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집중관리단체에 관할 당국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비회원 권리자를 대신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하고 로열티를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회원과 비회원 권리자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권리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로열티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영업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영업대리인³⁾은 규제 대상 권리를 취급하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 목록, 이용자가 영업대리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은 관할 당국에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소송대리인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등록 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시하고, 강요, 부정한 재산 범죄 또는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매년 소송 관련 사항을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6) 분쟁 해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로열티 징수 또는 분배, 공시된 요율에 따른 징수나 정해진 규칙에 따른 분배 실패,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 허락 거부, 법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요율 설정, 불합리한 조건 부과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로열티 지급 또는 수령을 명할 권한을 가지며, 로열티 징수가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2) 법률안에서는 지식재산청(DIP)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열티징수감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항소의 재결,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한 규칙 및 조건 제정, 이용 허락의 취소, 확장된 집중관리 라이선스 승인, 분쟁의 재결을 포함하는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3) 영업대리인은 저작권사업자나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자와의 이용허락계약 체결을 권유·중개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율 및 기타 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한 신청인은 유효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 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된다.

7) 집행

법률안은 단계적인 집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② 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며 준수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③ 행정질서벌(Phinai)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계마다 위반행위자에게는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태국의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전반의 개선은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강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컨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시행과 단계적 집행 체계 확립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 활성화와 권리 행사의 적정성 확보 측면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5fbdd35-067a-449b-abf0-486f3b2f5279>